

영등포구의회
제193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6. 3. 4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23호로 2016년 2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 및 「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」에 부합하도록 전국 수수료 표준 금액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유원시설업 허가(신고)관련 종목 세분화: 4종→7종

나. 인·허가 및 신고사항 수수료 금액 하향 조정

- 유원시설업 허가 등: 60,000원~15,000원 ⇒ 60,000원~10,000원

-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변경: 10,000원 ⇒ 5,000원

- 석유판매업 등록 등: 50,000원~15,000원 ⇒ 20,000원~10,000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, 「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¹⁾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(이하 ‘규정’이라 한다)에 따라 영등포구 수수료 중 전국 표준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종목에 대하여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고, 수수료 종목 및 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으로,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수수료 외 7개 종목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전국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며, 인하 조정대상 종목은 최근 5년간(2011년~2015년) 12건 33만원이 소액 징수되어 구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연번	종 목	건수	금 액(원)
계		12	330,000
1	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	3	180,000
2	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	2	60,000
3	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	6	60,000
4	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	0	0
5	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등록	1	30,000
6	석유판매업(일반, 항공, 특수판매업)등록	0	0
7	석유대체연료판매업(주유소)등록	0	0
8	석유대체연료판매업(판매소)등록	0	0

1)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.>

- 또한, 종전에 유원시설업과 기타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종합유원시설업, 일반유원시설업, 기타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으로 세분화하고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를 추가하는 등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처리 시 혼선을 방지하고 구민이 쉽게 이해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.

□ 수수료 비교표

(단위:건/원)

종 목	수 수 료	
	현 행	개 정
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(조건부 영업허가)	60,000	60,000
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(변경신고)	30,000	30,000
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(조건부 영업허가)	<u>60,000</u>	<u>50,000</u>
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(변경신고)	<u>30,000</u>	<u>15,000</u>
기타유원시설업 신고 (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)	30,000	30,000
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	15,000	15,000
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(신설항목)	-	10,000
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	<u>10,000</u>	<u>5,000</u>
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	<u>50,000</u>	<u>20,000</u>
석유판매업(용재판매소)등록	<u>30,000</u>	<u>10,000</u>
석유판매업(일반판매소·항공유판매업· 특수판매소)신고	<u>15,000</u>	<u>10,000</u>
석유대체연료판매업(주유소)등록	<u>50,000</u>	<u>20,000</u>
석유대체연료판매업(판매소)등록	<u>30,000</u>	<u>10,000</u>